

##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관련 주요내용 (2021.11.1. 기준)

구분		내 용
위임장	위임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장 2년 ※ 위임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</li> </ul>
	제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편, 팩스, 방문 제출 또는 전산을 통해 직접 등록도 가능</li> </ul>
	제출 관할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자의 주소지 관할 지사와 상관없이 모든 지사에 제출 가능</li> <li>→ 관할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하지 않음</li> </ul>
	원본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임장 원본 서류 보존 불필요</li> </ul>
	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임인 개인별로 ①위임장 및 ②환자신분증 사본</li> </ul>
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자가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수령 불필요</li> </ul>
전산청구 시 제출서류	제출서류 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환자 100% 수납 시) ①처방전, ②환자 100% 부담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(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불필요)</li> <li>(환자 10% 수납 시) ①처방전, ②환자 부담 10%에 대한 카드매출전표(또는 현금영수증), ③공단부담금 90%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</li> </ul>
	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세부품목 기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부품목 기재 없이 전체품목을 묶어서 작성 예) "채혈침 외 2종", "당뇨소모성 재료"</li> <li>※ 환자가 당뇨병소모성재료 구입과 동시에 알콜솜, 일반의약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환자부담 영수증(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)을 청구액에 맞춰 별도로 발행할 필요 없음</li> </ul>
	거래명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거래명세서 제출 불필요</li> <li>※ 전산청구시에는 청구서에 판매 세부내역이 기재되므로, 별도의 세부내역 증빙 불필요</li> </ul>
	서류보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산청구 시 약국에서 별도 보관 불필요</li> </ul>
	제출서류 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환자가 직접청구하는 경우) ①청구서, ②처방전, ③환자 100% 부담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(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)</li> <li>(약국이 위임받아 청구하는 경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약국이 환자에게 위임받아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환자의 위임장 및 환자신분증 제출 필요</li> <li>- (환자 100% 수납 시) ①청구서, ②처방전, ③환자 부담 100%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(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)</li> <li>- (환자 10% 수납 시) ①청구서, ②처방전, ③환자 부담 10%에 대한 카드매출전표(또는 현금영수증), ④공단부담금 90%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(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)</li> </ul> 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예기간(2021.10.31.)까지 판매건에 대해서는 2021.11.30.까지 청구 필요</li> <li>위임장 작성·제출을 위한 신분증 구비에 대해 환자 안내 실시(보험공단에서 배포한 포스터 등 활용)</li> </ul>	